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031

발의연월일: 2023. 2. 15.

발 의 자:이달곤·백종헌·정희용

조수진 • 박덕흠 • 김용판

하영제 · 임이자 · 박 진

김도읍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가축전염병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 농장격리 등일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 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 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 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 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소비 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5 신설).

법률 제 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가축전염병 발생의 예측·감시 능력 향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5(가축전염병 발생의 예
	<u>측·감시 능력 향상 등) ① 농</u>
	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전염병
	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
	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
	<u> 여야 한다.</u>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
	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은 가축
	의 소유자등이 가축전염병 예
	방 및 그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